

제23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8. 3.15.)

# 조례·일반의안 검토 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신 능 호]

# 목 차

---

1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
2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3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4	거창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	23
5	신원면 사랑누리센터 태양광발전소 설치 동의안 -----	33

# 〔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8. 3. 5.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8. 3. 6.

## 2.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의 개정(‘18.1.18.시행)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사항을 정하여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

### 나. 재난피해자의 지원 결정을 규정함(안 제3조)

-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결정
- 경상남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다.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생활안정지원: 구호비·생계비·주거비 지원, 고등학교 수업료 면제
- 간접지원: 농어업인·임업인·소상공인 자금 융자 및 이자 감면 등
- 피해수습지원: 공공시설 복구, 피해자 수색 및 구조 등

- 라.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중복지원 제한 규정을 둠(안 제5조)
- 마.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을 위한 신고, 조사 등을 규정함(안 제6조)
  - 재난피해자는 지원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신고
  -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조사하여 직권으로 지원 가능
- 바. 지급방법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8조·제9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나. 예산 조치: 상황발생 시 예비비 사용계획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 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18. 1. 4. ~ 2. 12.
  - 예고결과: 의견 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도내 개정완료
  - 제정완료(2): 창녕, 통영
  - 입법예고(11): 거제, 양산, 진주, 밀양, 창원, 김해, 합천, 함안, 고성, 남해, 의령
- (7) 표준안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사례 반영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지원 사항을 정하여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 수습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 ● 관련법령 발췌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18.1.18.] [법률 제14553호, 2017.1.17., 일부개정]

현 행	개 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u>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u>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u>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2017.1.18.시행>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다. 삭제 <2013.8.6.>

2.~11. (생략)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6., 2017.1.17.>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6., 2014.12.30., 2017.1.17.>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용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용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1.17.>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⑦ 제3항 각 호에 따라 지원되는 금품 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신설 2017.1.17.>

[전문개정 2010.6.8.] [제목개정 2013.8.6.]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7.9.5.]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9.5., 타법개정]

제2조(재난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7.7.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2.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전문개정 2010.12.7.]

**제8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피해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76조제4항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관리에 관한 사무

②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는 법 제76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3조(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 ① 국가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한다.

1. 생활안정지원: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구호 및 지원

가.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구 구성원에 대한 생계비 지원

1)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농업·어업·임업 및 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주거비 지원

1)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2) 사회재난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주거하던 곳에서 주거가 불가능하게 된 사람

3) 재난 수습을 위하여 주된 거주지에서 이주하게 된 사람

라.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또는 주된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된 사람에 대한 구호

마. 고등학생의 수업료 면제

2. 간접지원: 재난피해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농업인·어업인·임업인 및 염생산업인에 대한 자금 융자

나. 농업·어업·임업 및 염생산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융자

라. 주택 복구자금의 융자

마.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또는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3. 피해수습지원: 사회재난 피해 수습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가. 공공시설의 복구

나. 재난피해자의 수색 및 구조

다. 오염물 및 잔해물의 방제 및 처리

라.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등의 추모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에 드는 비용에 대한 재원별 부담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생활안정지원과 피해수습지원 비용의 산정 등)** ①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에 필요한 국고와 지방비는 해당 사업에 드는 실제 비용과 피해금액 등을 기초로 별표의 부담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확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지방재정법」

[시행 2017.10.24.] [법률 제14919호, 2017.10.24., 일부개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4.5.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5.28.>

[전문개정 2011.8.4.]

[별지 서식]

#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

##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그 밖의(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휴대전화번호	- -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 -	통신사명	[ ]KT [ ]SKT [ ]LGU+ [ ]기타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유선전화	( ) -	통신사명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여부	[ ] 세대주, [ ] 세대원	가족 수	명 (본인 포함 세대원)			
고등학생 수	(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도시가스 사용 여부	여 [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인명 피해	신고	[ ] 사망·실종, [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확정	[ ] 사망·실종, [ ] 부상(부상 정도: ), [ ] 사업피해(휴업 [ ]/폐업 [ ]/실직 [ ])				
시설 피해	시설명	①	②	③	④	
	총면적(소유+임차)	①	②	③	④	
	면허·허가· 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피해 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확정	①	②	③	④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용자신청 여부	[ ]	[ ]	[ ]	[ ]		

## 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여 [ ], 부 [ ]	내용:
다른 시·군·구 피해신고 여부	여 [ ], 부 [ ]	내용: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 \_\_\_\_\_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거창군수가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거창군수가 응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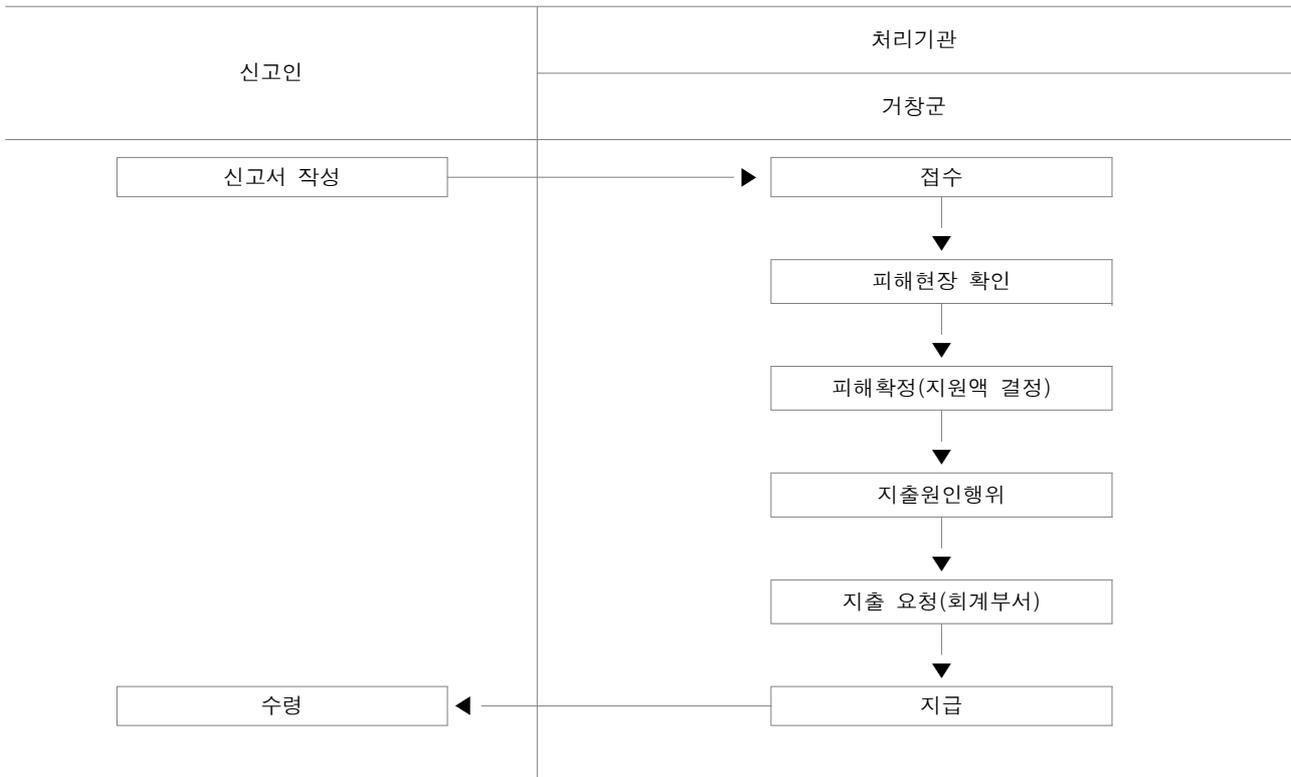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 작성 방법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애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애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 처리 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8. 3. 5.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8. 3. 6.

## 2. 개정이유

-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에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거창군 농업인 회관에 대한 개수·보수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군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거창군 농업인회관 개수·보수비 지원근거를 신설함(안 제4조 제1항제10호, 별표)
  - 지원을 100퍼센트 이내

## 4.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
- 나. 예산 조치: 2018년 제1회 추경 확보(예정)
-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예산담당)
  - ※ 예 산: 제1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예정

## 라. 기타 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8. 1. 22. ~ 2. 12.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없음

##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거창군 농업인회관의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군비를 지원으로 하는 보조사업 조례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군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농업인회관은 토지 및 건축물이 보조사업으로 2010년 준공되어 거창군 농업인 단체연합 영농 조합법인으로 소유권 보전등기가 된 시설물이며 관리는 자체적인 내부정관에 의하여 자체운영(사용료 및 대관료 수입)되고 있음.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제4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필요 인정)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2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하며 이는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으로 인정하고 있음.

- 따라서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사항인 농업인회관의 개·보수사업에 필요한 경비지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의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나, 지방재정법상 지원 대상 여부의 설명이 필요함.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재정법」

[시행 2017.10.24.] [법률 제14919호, 2017.10.24.,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③ 삭제 <2013.7.16.>

#### □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7.12.29.] [대통령령 제28521호, 2017.12.29., 타법개정]

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① 삭제 <2011.9.6.>

②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개정 2014.11.28.>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2011.9.6.>

⑤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1.28.,

2017.7.26.>

[제목개정 2014.11.28.]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17.3.21.] [법률 제14647호, 2017.3.21.,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읍·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 마. 생태계의 보전
  -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5.6.22.>

②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③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⑤ 소비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제9조(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제11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립·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연구·홍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증진하고 국민들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인·농업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45조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6.22.]

**제48조(농촌지역 발전시책의 수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지역 발전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촌지역 발전시책을 세우는 경우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 생산여건, 농촌 생활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6.9.5.] [대통령령 제27482호, 2016.9.5., 타법개정]

제19조(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법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2015.12.22.>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연구기관이나 연구기관의 부설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4. 다음 각 목의 법인
  - 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다. 생산자단체

#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1조(목적)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어업보조금의 교부사업 및 교부기준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농어업보조금 지원을 목적으로 함.

## 2. 미첨부 근거 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일부 개정된 조례안의 신설 규정은 신설 규정목적이 농업인 회관 유지보수를 위한 한시적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 3. 미첨부 사유

-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으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함.

## 4. 작성자

거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 〔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8. 3. 5.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8. 3. 6.

## 2. 개정이유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시행지침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토록 되어 귀농정책위원회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인용법령 삭제하여 위임조례가 아닌 자치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나.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삭제함(안 제4조)
- 다. 위원회의 구성을 현행화 함(안 제6조)
- 라. 위원회의 회의소집을 보완함(안 제9조제2항)
- 마. 귀농인·귀농단체 지원사업 중 인구증가 지원사업과 중복 사업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 수정(안 제15조제1항제2호)
  - (현행) 귀농세대에 대한 500만원 이내의 영농정착금 지원
  - (변경) 귀농세대에 영농정착금 지원

## 4.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 나. 예산 조치: '18년도 예산 4억 확보(영농정착금)
-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 라. 기타 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8. 1. 10. ~ 1. 29.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4) 비용추계서: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17년 3월 개정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및 시행지침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고 있어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구입·신축·수리 또는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 ● 관련법령 발췌

####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귀농어귀촌법 )

[시행 2017.3.21.] [법률 제14642호, 2017.3.21., 일부개정]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생활안정,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알선
  2. 귀농어업인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기술·경영컨설팅 지원
  3.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구입·신축·수리 또는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농어업법인 등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자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

[시행 2017.3.21.] [법률 제14647호, 2017.3.21., 일부개정]

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업인(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 □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시행일 : 2016.07.20., 일부개정]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의 수립
2. 귀농인 유치 및 지원을 위한 주요정책의 개발·기획 및 조정
3. 귀농인 지원사업의 심사, 결정 및 변경·취소에 관한 사항
4. 귀농인의 안정적 조기정착을 위한 방안 협의
5. 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 홍보
6. 그 밖에 귀농인 유치 및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일 : 2017.11.29)

제 20조 (지원내용 및 업무관장) ① 군수는 인구증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내용·규모·절차 등을 군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2014.10.01)

1. 전입세대에 대한 30만원 범위에서 전입 정착금 또는 기념품 지원(행정과)(개정 2008.12.31. 2017.11.29)
2. 귀농세대에 대한 500만원 범위에서 영농정착금 지원(농업기술센터)(개정 2008.12.31. 2017.11.29)

#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1인 귀농세대 지원(제15조제1항제2호)
  - 1인 귀농세대 영농정착금: 250만원 이내

## 2. 비용추계의 결과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합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세출	귀농세대 (영농정착금)	400	400	400	400	400	2,000
	계	400	400	400	400	400	2,000

※ 산출기초: 귀농세대 80명(추정) × 500만원 = 400백만원 (\* 1인 귀농세대 포함)

## 3. 관련 의견

- 신규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귀농 유치 활성화를 도모
-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유도하고자 함.

작성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 〔 거창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8. 3. 5.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8. 3. 6.

## 2. 배경 및 목적

- 거창 지역단위에서의 풍수해 특성을 고려 풍수해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하여 피해를 최대한 저감시키고 풍수해 발생 시 지역과 국가가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역방재정책 수립 필요
-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관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풍수해 요소를 정의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함은 물론 투자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거창군 방재계획의 총괄 로드맵을 작성, 주민들이 풍수해로부터의 위협을 극소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근 거: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 3. 계획개요

- 가. 계 획 명: 거창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 나. 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 거창군 전 지역(A=803.17km<sup>2</sup>), 하천 238개소
- 시간적 범위: 10년(기준연도 2018년, 목표연도 2027년)
- 대상 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 다. 기초조사 현황

- 일반현황: 행정, 인문, 자연(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42개소, 소하천 195개소), 방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저류지, 우·오수 관거, 사방시설, 저수지, 세천 등)
- 과거 풍수해발생 현황조사(2006년~2015년)
- 주민설문조사 및 후보지 현장조사(321개소)
- 관련계획 조사: 방재관련계획, 토지이용관련계획, 시설정비 종합계획 등

#### 라. 위험지구 선정기준

- 시·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행안부고시 제2017-1호)
- 기초현황조사(주민설문, 현장조사)를 통한 피해 발생지역 반영
- 개별법에 의한 지정된 위험지구 검토
- 시설정비종합계획 미수립구간 반영
- 재해유형별 정량적 지표 마련 및 적용(면적, 자산, 인구수, 재해취약자수, 건물수, 유동인구, 불편도 등)

바. 수립절차: 관계기관 협의,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시·도지사 협의,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사. 소요예산: 652,190천원

##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가.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서의 역할 수행

- 타 분야 활용 및 부분별 조정역할 투자우선순위 고려한 합리적인 사업시행

### 나. 국·도비(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및 특별교부세 등 사업비 확보 근거 마련

##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 나. 그간 추진현황

- 2016. 10.: 용역추진사항 보고회(1차)
- 2016. 10. ~ 12.: 주민설문조사 및 설명회, 현장조사
- 2017. 3.: 용역추진사항 보고회(2차)
- 2017. 4. ~ 2018. 1.: 위험지구 선정 및 위험지구 저감대책 수립
- 2018. 2.: 민관합동조사 및 읍·면별 주민설명회 개최

### 다. 향후계획

- 2018. 3.: 지방의회 의견청취
- 2018. 4.: 주민공청회 개최
- 2018. 5.: 관계기관 협의
- 2018. 6. ~ 8.: 경상남도 협의 및 행안부 사전협의, 전문가 심의
- 2018. 9. ~ 10.: 행안부 승인 및 과업준공

### ※ 풍수해 후보지 및 위험지구 현황

- 총괄: 위험지구 76개소, 후보지 321개소
  - 하천재해: 위험지구 24개소, 후보지 126개소
  - 내수재해: 위험지구 11개소, 후보지 30개소
  - 사면재해: 위험지구 26개소, 후보지 60개소
  - 토사재해: 위험지구 7개소, 후보지 53개소
  - 바람재해: 위험지구 0개소, 후보지 15개소
  - 기타재해: 위험지구 8개소, 후보지 37개소

## 6. 검토의견

- 본 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라 5년마다 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와 협의 및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등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후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안을 수정·보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금회 거창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풍수해 위험요인을 조사·분석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저감대책 및 실효성 있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최상위 방재 종합계획으로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대책, 사업비, 투자우선순위 등 안전한 지역 사회 구축에 근간이 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19조 및 제19조의2에서 같다)·군수는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하 "시·군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3.21., 2017.7.26.>

②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시·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하 "시·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3.21., 2017.7.26.>

③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가 각각 시·군 종합계획 및 시·도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긴급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2., 2016.1.27.>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변경권자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군 종합계획과 시·도 종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2.2.22., 2016.1.27.>

⑤ 시·군 종합계획과 시·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6.1.27.>

[전문개정 2011.3.7.] [시행일 : 2018.3.22.] 제16조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 2018.2.9.]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2.9., 타법개정]

제13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 ① 법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4.22., 2017.1.26.>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2. 유역 현황, 하천 현황, 기상 현황, 방재시설 현황 등 재해 발생 현황 및 재해 위험 요인 실태에 관한 사항
3. 풍수해 재해복구사업의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4. 지역별, 주요 시설별 풍수해 위험 분석에 관한 사항
5. 법제18조의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6. 풍수해 저감을 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등에 관한 사항
8. 제14조제7항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 수립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법 제1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긴급한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1.26.>

③ 제2항의 공청회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2.8.22.]

제14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승인 등)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법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승인받으려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자료
2. 공청회 개최 등 의견 수렴 결과
3. 지방의회 의견 청취 결과
4.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에 필요한 서류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이 제7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 수립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관계 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전문가 위촉 등 제3항에 따른 전문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하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⑦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1.26., 2017.7.26.>

[전문개정 2012.8.22.]

<붙임1> -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읍·면별 위험지구 및 후보지(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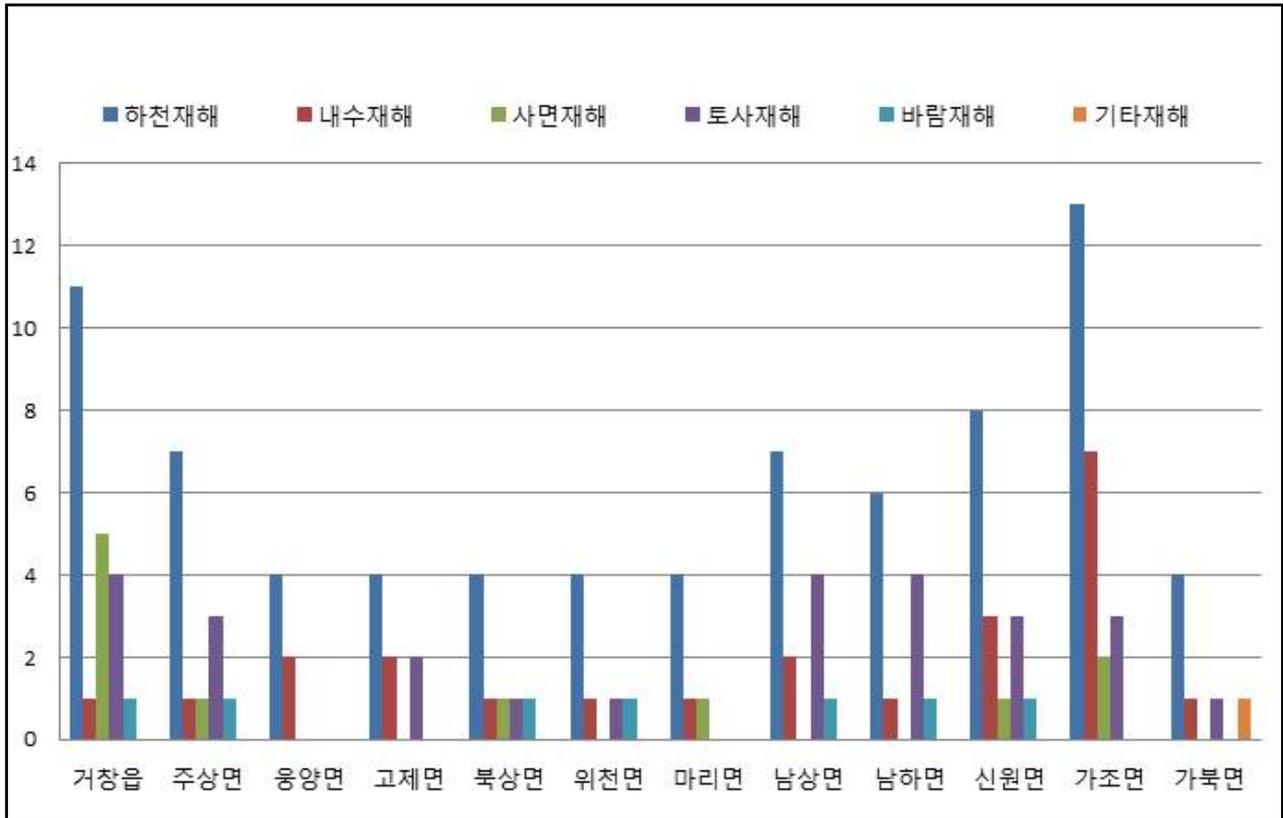
○ 거창군 풍수해위험지구 선정(안) 결과

풍수해 유형	검토대상지역	풍수해위험지구			비고
		검토대상지역	후보지	위험지구	
계	·6개 재해유형	2,543	321	76	
하천 재해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42개소 ·소하천 195개소 ·총 238개소	238	126	24	
내수 재해	·배수소분구 19개소 ·농경지 저지대지역 25개소 ·SWMM 통한 침수해석결과 ·재해이력 및 탐문, 설문조사 등	88	30	11	
사면 재해	·일제급경사지 92개소 ·도로절개지 12개소 ·토석채취 및 개발지예정지 14개소 ·GIS 통한 비탈면해석결과 ·재해이력 및 탐문, 설문조사 등	340	60	26	
토사 재해	·사방시설 104개소 ·토사퇴적지역 18개소 ·GIS 통한 토사유출해석결과 ·재해이력 및 탐문, 설문조사 등	458	53	7	
바람 재해	·비닐하우스 876개소 ·골프연습장 4개소 ·송전탑 49개소 ·옥상간판 16개소 ·GIS 통한 강풍해석결과 ·재해이력 및 탐문, 설문조사 등	953	15	-	
기타 재해	·저수지 178개소 ·관내 세천 233개소 ·하천시설물 (보, 낙차공 3개소, 교량 34 개소) ·재해이력 및 탐문, 설문조사 등	466	3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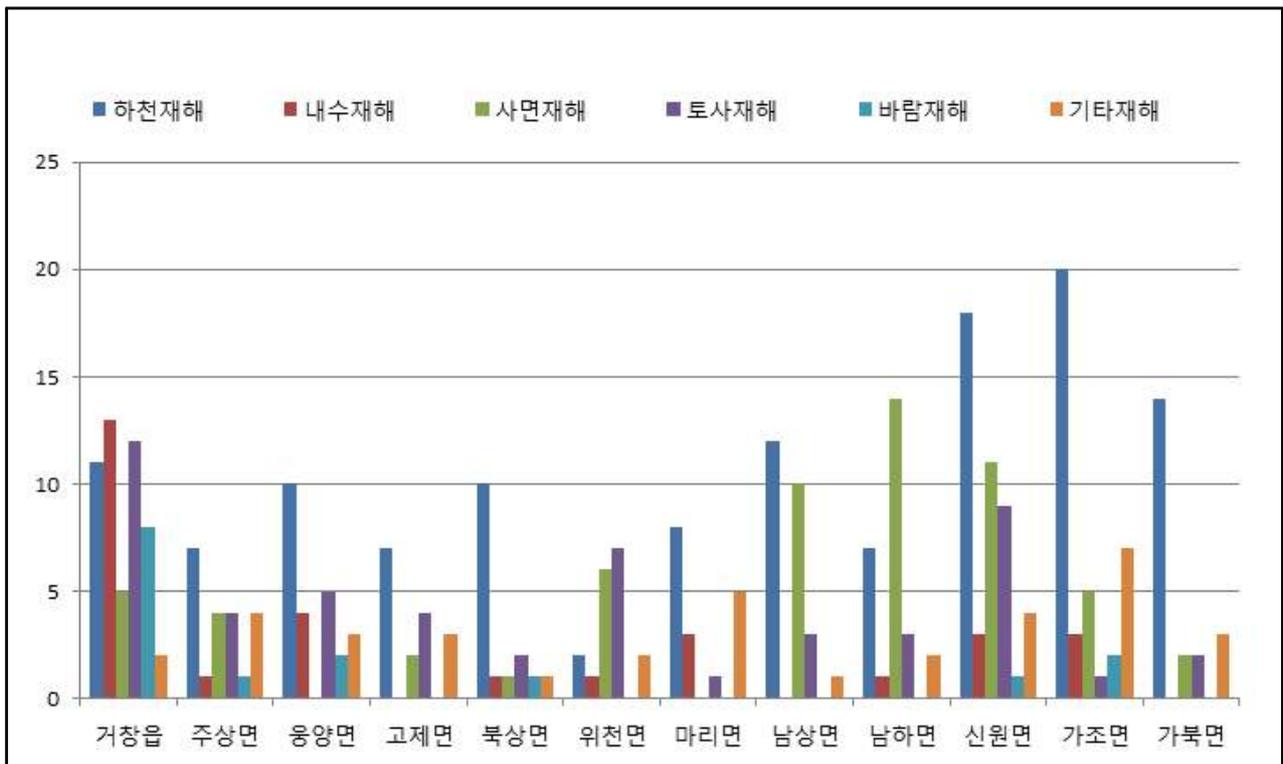
○ 읍·면별 풍수해위험지구 선정(안) 총괄

수 계	위험지구							후보지						
	소계	하천 재해	내수 재해	사면 재해	토사 재해	바람 재해	기타 재해	소계	하천 재해	내수 재해	사면 재해	토사 재해	바람 재해	기타 재해
계	76	24	11	26	7	-	8	321	126	30	60	53	15	37
거창읍	11	1	5	4	1	-	-	51	11	13	5	12	8	2
주상면	7	1	1	3	1	-	1	21	7	1	4	4	1	4
용양면	4	2	-	-	-	-	2	24	10	4	-	5	2	3
고제면	4	2	-	2	-	-	-	16	7	-	2	4	-	3
북상면	4	1	1	1	1	-	-	14	8	1	1	2	1	1
위천면	4	1	-	1	1	-	1	21	5	1	6	7	-	2
마리면	4	1	1	-	-	-	2	17	8	3	-	1	-	5
남상면	7	2	-	4	1	-	-	26	12	-	10	3	-	1
남하면	6	1	-	4	1	-	-	26	6	1	14	3	-	2
신원면	8	3	1	3	1	-	-	46	18	3	11	9	1	4
가조면	13	7	2	3	-	-	1	38	20	3	5	1	2	7
가북면	4	2	-	1	-	-	1	21	14	-	2	2	-	3

○ 읍·면별 위험지구 선정(안) 현황



○ 읍·면별 후보지 선정(안) 현황



# 〔 신원면 사랑누리센터 태양광발전소 설치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8. 3. 5.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8. 3. 6.

## 2. 제안이유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부응하고 신원면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주민 교육·문화·복지시설인 사랑누리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재원을 확충코자 한국수자원공사의 합천댐 주민주변지역 지원사업비(민간자본보조)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함.

## 3. 추진내용

###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신원면 사랑누리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
- 사 업 자: 신원면 생활체육협의회(대표: 엄홍주)
  - ※ 신원면소재지 정비사업 운영위원회
  - ※ 시공자(한국수자원공사)가 직접시행 후 인수인계
- 발전용량: 98.8kW
- 사 업 비: 280백만원(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주민주변지역 지원사업비)

## 나. 그간 추진사항

- 2017. 10.: 합천댐주민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 2018. 1.: 합천댐주민주변지역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 다. 공작물설치 대상 재산의 표시(토지소유자 거창군)

위 치	지적(m <sup>2</sup> )	태 양 광 설치면적	용 량	사용허가신청자
합 계	4,706.1	1,980	98.8kW	
신원면 과정리 945-1	496.3	496.3		신원면 생활체육협의회
신원면 과정리 946-1	274.9	274.9		"
신원면 과정리 947-1	3,934.9	1,208.8		"

## 라. 향후계획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후 사용료 부과 및 원상복구비 예치
  - 허가기간: 허가일로부터 10년간
  - 연간 사용료: 775,460원(부가세 포함)
    - ※ 산출내역: 재산평가액(공시지가×부지면적×요율5%)×50/100감면×1.1(부가세)
  - 철거(원상복구)비용: 6,000,000원 정도(보증보험보증서 징구)
    - ※ 산출내역: 태양광설치 98.8kW 철거공사 설계비 산출
- 2018. 3.: 개발행위(공작물설치) 등 개별법 허가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촉진법」 제26조
-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 제12조

## 나. 연간 수익 및 용도

- 연간 예상발전 수익: 23,000천원 정도
  - ※ 산출근거: 설치용량×일평균발전시간×365일×가중치×인증서 가격(SMP 가격)
- 수익금 사용
  - 신원면 사랑누리센터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재원확충
  - '참 좋은마을 운영위원회'의 자체 선순환 주민 문화·복지 사업 추진

##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부응하고 신원면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사랑누리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재원을 확충코자 한국수자원공사의 합천댐주민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군 의회가 심의할 내용은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사항으로 본 동의안의 관련법규로 집행부에서 제시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의회 동의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음, 따라서 **지방의회 동의에 필요한 법적 필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 또한 공작물설치 예정지 토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신원면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취득한 토지이며, 당초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사업구역에서 제척된 부분으로 당초 토지 취득시의 목적성에 부합되지 않아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환매권 유효 기간이며,

- 「농어촌정비법」 및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도 불일치(읍면 소재지 정비사업 소득사업 및 타 용도 사용제한)하므로 사업시행을 위하여는 우선 국비보조사업 지원 부처(농식품부) 및 원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후 태양광발전시설의 영구 시설물 축조에 대한 의회 동의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사업추진 계획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

제12조(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① 군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확대하여 에너지 자립기반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이용 기술개발 등에 적극 협력한다.

③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설치 사업비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요율은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른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22.] [법률 제14711호, 2017.3.21., 일부개정]

제91조(환매권) 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②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제74조제1항에 따라 매수하거나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환매할 수 없다.

④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되었을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

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해당 공익사업이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별표에 따른 사업이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변경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8.2.9.]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2.9., 타법개정]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2.9.>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17.7.26.>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

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개정 2016.8.31.>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전문개정 2014.7.7.]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2015.12.10.)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안)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는 그 소관으로 할 재산관리관이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2015.12.10.)

④ 재산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으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